

## 농정의 변화

### 올 농림예산 9조2,954억원

국회는 1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111조9,767억원 규모의 새해 전체 예산안과 9조2,954억원 규모의 농림분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같은 농림분야 예산은 2001년 8조8,100억원 보다 5.5%가 늘어난 규모지만 전체 예산 증가율 11.7%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가운데 농림부 예산은 8조1,856억원으로 지난해 7조7,723억원 보다 5.3% 늘어났으며,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예산은 각각 3,595억원, 7,503억원으로 10.9%, 3.7% 증가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지난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정부가 제출한 농림분야 예산안 가운데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등 2,015억원을 증액하고, 부채대책 이차보전 예산 등 1,249억원을 삭감해 766억원을 순증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논농업직불제보조금은 1ha당 농업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오르고,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국고보조는 지난해 50%에서 70%로 상향됐다.

### 3월부터 가축검역 수수료 납부

가축의 질병별 혈청검사 및 검역을 신청할 경우 오는 3월 하순부터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농림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혈청검사 및 검역 수수료 규칙'을 공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가축혈청검사 및 검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혈청검사 수수료는 보통 평균 3,500~5,000원 수준이며, 검역수수료는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 산양, 돼지, 사슴 등의 경우 건당 5만원, 개와 고양이는 건당 1만원, 토끼, 닭, 오리, 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은 3만원, 이외의 동물은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수의과학검역원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혈청

검사 또는 검역신청 ▲축산관련단체가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혈청검사 신청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세구역 안에서 압류·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경우는 해당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의 표지 또는 검역필의 표기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같음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이번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혈청검사 대상 질병 외의 질병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과 가장 유사한 질병의 검사방법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고, 같은 질병에 대하여 20 이상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방법 중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 올 농림예산 9조2,954억원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인이 직접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 등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던 종전의 제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인이 ① 직접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

등에게 신청하거나, ②농지관리위원 확인을 읍·면장 등에게 의뢰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 1,000㎡이하 소규모 농지취득 규제완화

신규농업인이 농지 취득시 '취득농지면적'을 1,000㎡(비닐하우스 등은 330㎡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농업경영면적'(취득면적+임차면적)이 1,000㎡(비닐하우스 등은 330㎡)이상이면 농지취득이 허용되도록 적용되었다.

## 농지조성비 분할시 납입보증보험증서 예치제도 신설

산업단지, 토지구획정리, 관광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업자가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코자 할 경우 납입 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도록 신설하였다.

## 영농규모화사업 농지매매자금 금리인하

# 2002

농지매매자금 융자금리를 연 4.5%에서 3.0%로 인하하였다.

##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 통합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중복 부과하던 종전의 제도를 농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농지조성비만 존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식육판매업소의 식육거래기록 의무제 시행

종전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 매입시 장부 기록 의무가 없던 것이 식육매입시 구입량, 부위·등급, 원산지 등을 기록하고 그 장부를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었다.

##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미시행도축장 처벌강화

과태로 30만원만 부과되던 종전 제도에서 과태로 처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해지도록 바뀌었다.

## 오수처리체계 강화

축사 등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기존 80~40ml 이하에서 20ml이하로 각각 강화된다. 또 건물을 신축하면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농가도우미제 전국 확대

임신·출산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제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출산 전후 3개월씩 6개월 사이에 도우미 품삯(일당 2만7,000원 기준)의 80%를 최고 30일간 지원해준다.

##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량제 사각지대인 농촌에 마을 단위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하는 마을 단위 종량제가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대형 폐기물 종류도 20개에서 54개로 확대돼 옷걸이, 장판, 향아리 등도 스티커를 부착,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 생활의 변화

###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중환자실 환자

입원비 500만원 이상의 중환자실 환자는 법정 본인 부담률이 지난해 20%에서 10%선으로 낮아진다. 또 소득 기준 하의 20%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무료검진이 실시된다.

### 무상 교육 확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올해는 신입생에 한해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지난해 1만5,474명에서 올해는 하의 20%인 8만6,982명으로 확대된다.

### 연체금 일부 갚아도 신용불량자 등록 연기

3월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에 연체금 일부만 갚아도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일이 연기된다.

### 재산세 과제기준일 및 납기 조정

재산세 과제기준일

납기 조정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세기준일이 달라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을 개선, 매년 6월1일로 통일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와 중복돼 국민의 세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해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조정했다.

### 국민연금 인상

보험요율이 현재 월 소득액 기준 5%에서 6%로 인상되고 연금보험료 고지·납부가 인터넷으로 처리된다.

### 이동통신요금 인하

이동통신요금 인하

SK텔레콤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료가 1만6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통화료는 10초당 22원에서 21원으로 내린다.